

폐기물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

납부자	성명				
	주소				
	사업장 소재지				
	상호 또는 명칭				
폐기물부담금의 내용					
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	금액	미납 여부	
징수유예(기간 연장) 기간		20 . . .부터 20 . . .까지			
분할납부의 기한 및 금액					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분할납부기한	분할납부금액	미납 여부
징수유예(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) 취소 금액 내용					
횟수	연도(분기)	발행번호	납부기한(분할납부기한)	금액(분할납부금액)	
징수유예 취소 사유					
귀하에게 제 호(20 . . .)로 승인한 징수유예(분할납부 및 징수유예 기간 연장)를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의3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하였음을 통지합니다.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기본법」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년 월 일					
한국환경공단 이사장			직인		